

▶ 주의사항

국가기술자격증

- 국가기술자격증은 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시해야 합니다.
-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취업·중인 사업체 등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의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 국가기술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차용·일선하면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거나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는 경우 등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됩니다.
-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자체 없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주무부처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 자격번호 : 22204050989J

■ 자격종목 :

■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성명 : 홍보선

■ 자격증 취득 내용

종목명	자격증번호	합격일
발급일	변경항목	변경 후 사항 확인
소방설비기사(전기 분야)	22202052052L	2022.09.02
전기기능사	22401050898D	2022.04.15
기계설계산업기사	01201072251H	2001.06.04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00202010459P	2000.05.29
이 허여백	이 허여백	2000.05.29

■ 비고

◦변경사항

■ 날짜	■ 변경항목	■ 변경 후 사항 확인
------	--------	--------------

위 자격증의 진위확인은 공단 홈페이지([O-net.or.kr])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대표전화 1644-8000)
이 증명서는 이전 주소지로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우편으로 발송되는 경우 배송료는 500원입니다.
※국내 우편으로 발송되는 경우 배송료는 500원입니다.

*본 국가기술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에 따라
소방청장의 위탁을 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확인·발급함.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